

삼구트리니언 시그니처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

귀하가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- 제출기한 : 2022.07.08.(금) ~ 2022.07.14.(목) 10:00 ~ 17:00(7일간)
- 장 소 : 삼구트리니언 시그니처 건본주택 [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72 (죽도동)] ☎ 1666 - 7400
- 유의사항 :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 06. 16.) 이후 발급분에 한함.

| 구분 | 해당서류 | 발급 기준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
| 필수서류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| 본인 | • 건본주택 비치 |
|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본인 | 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※ 대리 발급분 불가 •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(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) |
| | 신분증 | 본인 |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|
| | 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 | 본인 |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정보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 | 본인 |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•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(출입국기록출력 Y로 발급) |
| | 가점산정기준표 | 본인 | • 건본주택 비치 |
| 가점제 당첨자 추가서류 | 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 | 배우자 | 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정보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혼인관계증명서 | 본인 | •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배우자 | •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(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•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| 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 | 피부양 직계존속 | •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| 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| 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|
| | 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 | | •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피부양 직계비속 | 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 |
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| 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|
|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(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) |
| 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 | 해당자 |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|
|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|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| | |
|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본인 | 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 ※ 대리 발급분 불가 |
| | 위임장 | 본인 | •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|
| | 신분증 | 대리인 |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 중 택1 |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,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.
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.

■ 해외근로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 (※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필수)

| 구분 | 해당서류 | 발급 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 | 해외체류 증빙서류 | 본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반드시 제출) :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|
| |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|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(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) |
| 추가서류 (해당자 한함) |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| 본인 또는 세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 이하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|